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7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조인철·주철현·이해민

김문수・이건태・박용갑

박민규ㆍ허 영ㆍ한민수

한정애 • 고민정 • 윤준병

정진욱 • 이재관 • 임광현

박해철 • 박지워 의워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 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20세"를 각각 "24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제50조(기본공제) ①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	
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u>150만원</u> 을 곱하	<u>200</u> 만원
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2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	
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u>100만원</u> 이하인 사	<u>200만원</u>
람(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의	<u>700만원</u>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	
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	3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u>100만원</u>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u>500만</u>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생략)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u>2</u> <u>0세</u>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인 사람

라. • 마. (생략)

②・③ (생 략)

	200만원
_	
<u>원</u>	
	-
가. (현행과 같음)	
나	
	· <u>24세</u>
<u>24세</u>	
	9
다	
<u>4세</u>	
라.•마. (현행과 같	음)
②·③ (현행과 같음)	